

# 2022년 장애이해(인식개선) 관련 교육 개요

## 교육과정국 특수교육과

※ 대상: 각급학교(유·초·중·고·특 및 각종학교)

구분	설립별	대상	(교육부) 장애이해교육 ※연 2회	(보건복지부)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무 교육	비고	교육 실시 참고 사항
각급 학교	전체	학생	○ (특수학교 제외)	○			장애이해교육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상호 인정	1)장애이해교육 2회 실시
	국·공립	교원, 행정직		○		○		1)비고의 경기도교육연수원 ①번 연수 이수 추천 2)교내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원격 또는 집합)
	국·공립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	○	○	경기도교육연수원 ①, ② 과정 중 하나만 이수 할 경우 상호 인정 ①{상시}(공통)의무교육통합과정 II(장애 인식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성희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반부패 청렴, 정보공개) 원격직무연수	
	사립	교직원		○	○	○	②{상시}(장애인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원격직무연수	
비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법정의무연수 통합과정 이수 시 상호 인정	2022년부터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교육 등과 상호 인정 불가로 별도 실시			

실적 이수 증빙 자료

1. 원격연수: 원격연수 이수증
2. 교내 집합 연수: 서명 등록부(교육 종류에 따라 계획서, 사진 추가 필요)

※ 대상: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구분	대상	(교육부) 장애이해교육 ※연 2회	(보건복지부)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무 교육	비고	교육 실시 참고 사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원, 지방공무원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	○		경기도교육연수원 ①, ②중 하나의 과정을 이수 할 경우 상호 인정 ①{상시}(공통)의무교육통합과정 II(장애인식개선,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반부패 청렴, 정보공개) 원격직무연수 ②{상시}(장애인식,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통합교육 원격직무연수	1)비고의 경기도교육연수원 ①번 연수 이수 추천
비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법정외무연수 통합과정 이수 시 상호 인정				

실적 이수 증빙 자료

1. 원격연수: 원격연수 이수증
2. 기관내 집합 연수: 서명 등록부(교육 종류에 따라 계획서, 사진 추가 필요)

# 2022년 장애이해(인식개선) 관련 교육 운영 안내

교육과정국 특수교육과

## I 큰 거

1. (장애이해교육) 2022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2.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II 방 침

1. (장애이해교육) 국·공·사립 유·초·중·고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실시
2.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각급학교 및 기관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립학교 기간제교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2022년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통합 이수가 가능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운영하지 않음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각급학교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1. 장애이해교육(교육부)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1)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가)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

### < (활용 안내)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

- ◆ (유치원)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유튜브 탑재
- ◆ (초등) (KBS 라디오) 「대한민국 1교사」,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 (중등) (KBS TV) 장애이해드라마,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나) 장애이해교육\*을 반영한 유치원 및 각급학교 연간교육계획 수립·추진

-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 참여,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강사 강의,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나.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1) 국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에 기여
- 2) 유·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등) 배포·활용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le.net) 누리집의 학교급별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시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 탑재 공유·활용
- 3) 범국민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콘텐츠 전파

다. 실적 증빙 자료(자체 보관하며 교육부에서 요청 시 제출)

- 1) 교육 계획서(내부결재)
- 2) 교육 결과(내부결재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메모 보고)

## 2.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보건복지부)

### 가. 기본 개요

- 1)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2) 교육 개요: 교육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교육 대상: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학교 등 7만여 개 기관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및 유아(만 3세 미만 영아는 교육 자율)
- 4) 교육 기간: 2022.1.1. ~ 2022.12.31.까지
  -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5)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권장
  - 유아(20분)/초등학생(40분)/중학생(45분)/고등학생(50분)/성인(60분)
- 6)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7) 교육 인원: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8) 교육 방법 및 활용: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방법 자율 운영
  - ※ 단,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소속 직원·학생의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강사와 학습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직접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정인원 분배 또는 안전한 대면 방식인 줌(ZOOM) 등으로 교육 실시 권장
- 9) 결과 점검: 기관별 제출한 교육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실적배점표’에 의거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 실시

- 10) 후속 조치: 2022년 교육 실시결과 및 부진기관 통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
  - 부진기관 기준에 의거,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 11) 결과 공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기관 등 언론 공표 실시

나. 교육 의무대상기관

- 1)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의 ‘지방행정기관 통계’를 기준으로 교육청(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기준
- 2)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자료기준
  -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와 별개로 개별 기관 단위로 개별 교육 실적을 입력
- 3)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 초등학교, 초등학교(분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개별 기관 단위로 개별 교육 실적을 입력하여야 함

다. 실적 증빙 자료(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 1) 교육 계획서
- 2) 교육 결과
  - 등록부, 내부기안, 교육보고서, 교육사진(얼굴비공개), 교육이수명단 등 중 택 1

###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고용노동부)

#### 가. 교육 대상

- 1) 사업주(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학교법인)
- 2) 근로자
  - 공립학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나.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다. 교육 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라. 교육방법: 집합·원격·체험 교육 형태로 실시

- 1)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 2) 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마. 실적 증빙 자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_마이페이지\_교육결과 등록)

- 1) 교육 일지
- 2) 참석자 명단(등록부) ※ 원격연수 시 연수이수증
- 3) 교육현장 사진

####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보건복지부)

가. 교육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나. 교육 내용

-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다. 교육 방법

- 1)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2) 교육콘텐츠
  - 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in.kohi.or.kr/index.do>)
  - 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www.naapd.or.kr](http://www.naapd.or.kr))
  - 다) 유튜브\_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1~4차시)

라. 실적 증빙 자료(자체 보관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요청 시 제출)

- 1) 집합교육
  - 가)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비대면일 경우 화면 캡처), 참석자 서명부
  - 나)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등록부 등
- 2) 원격교육(인터넷 강의)
  - 가)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교육 이수증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 나) 복지부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복지부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이수증 등

## 참고1 (교육부) 2021 장애이해교육 현황 조사 양식

### 1. 장애이해교육 실시 학교 현황 조사

유치원 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고등학교 수			
미실시	1회 실시	2회 이상 실시	계	미실시	1회 실시	2회 이상 실시	계	미실시	1회 실시	2회 이상 실시	계	미실시	1회 실시	2회 이상 실시	계

### 2. 장애이해교육 참여 학생 현황 조사

교육방법 참여실적		장애인식개선콘텐츠 '친구가 되어요' 활용(유아)	대한민국 1교시 수업 참여 (초등)	장애이해 드라마 '나의 너에게' 시청 (중학·고등)	장애 체험활동 참여	교내외 강사 강의 참여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타 (장애인 시설 방문 등)
유치원	유치원 수							
	학생 수							
초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계	학교 수	-	-	-	-	-	-	-
	학생 수	-	-	-	-	-	-	-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50)	교육 참여 (6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고위직(10)	70% 이상	10
			60% 이상 - 70%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50% 미만	0
	직원(40)	70% 이상	40	
		60% 이상 - 70% 미만	30	
		50% 이상 - 60% 미만	20	
	교육방법 및 활용(30)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30
			* (전문강사)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일반강사 교육	20
내부직원 교육			15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2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2	
		* (n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청관·익권 반영 등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np) 지역주민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공통 기준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체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3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에서 제외
- 금융성률 만족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
- 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바람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 초 · 중 · 고 · 특, 각종학교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B)>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이수립	0	
교육 실시(90)	교육 참여 (6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고위직(10)	70% 이상	10
			60% 이상 - 70%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50% 미만	0
		직원(20)	70% 이상	20
			60% 이상 - 70% 미만	15
			50% 이상 - 60% 미만	10
			50% 미만	5
	학생(20)	70% 이상	20	
		60% 이상 - 70% 미만	15	
		50% 이상 - 60% 미만	10	
		50% 미만	5	
교육방법 및 활용(30)	교육방법 및 활용(30)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 (전문강사)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30	
		일반강사 교육	20	
		내부직원 교육	15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3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 (ti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청문·익권 반영 등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tip)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공통 기준

- (부친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계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4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친기관에서 제외
- 급용성용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명확인이 불거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
- 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발 확인 바람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유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C)>

'영유아부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백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90)	교육 참여 (6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직원(25)	70% 이상	25
			60% 이상 - 70% 미만	20
			50% 이상 - 60% 미만	15
			50% 미만	10
	학생(원생) (25)	70% 이상	25	
		60% 이상 - 70% 미만	20	
		50% 이상 - 60% 미만	15	
		50% 미만	10	
	교육방법 및 활용(30)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30
		* (전문강사)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일반강사 교육		20		
내부직원 교육		15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3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 (ti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청관·역관 반영, 교육과정 편성 등		2	
	장애인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tip)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공통 기준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체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4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에서 제외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
- 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된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인지는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바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법인 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장 수	개	⑥ 사업장 소재지	
⑦ 사업체 전화번호		⑧ 사업체 팩스번호	
⑨ 담당자 연락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

⑩ 교육일자	⑪ 교육방법	⑫ 교육주체	⑬ 사내강사 수료 번호
⑭ 사업주 인원	⑮ 사업주 교육 참여 인원	⑯ 상시 근로자 수	⑰ 상시 근로자 교육 참여 인원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첨부서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참고4

##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강사명(소속)	교육대상 인원수	교육 수료 인원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탑재) 운영 기관명	탑재 사이트 주소
	경기 평택	홍00	2022. 09. 07. ~ 2022. 11. 25.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100명	80명	1시간 30분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복지부 콘텐츠 탑재 기타기관 중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 복지부 콘텐츠 탑재일 경우만 작성	* 교육방법 중 (인터넷) 복지부 콘텐츠 탑재일 경우만 작성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1. (집합교육) 강사 또는 복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비대면일 경우 화면 캡처), 참석자 서명부 등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등

2.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 (복지부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복지부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구분	장애이해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무 교육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거	2022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교육 실시의무자	각급학교의 장	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각급학교의 장	사업주(교육감 및 학교법인)	각급학교의 장
교육 대상자	각급학교 소속 학생	각급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	사업주 및 근로자(공립학교 기간제교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포함)
횟수	연 2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내용	1. 장애의 이해 및 특성 2. 장애인권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방법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 참여,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가 강의를,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집합·원격·체험·간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 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 실시* *전문강사 초빙, 사내 강사(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1.1.1.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교육 이수한 자)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교육콘텐츠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유튜브 탑재 2.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3.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풀 활용 4.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누리집의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1. 경기도교육연수원 법정의무연수 -(상시)(공통)의무교육통합과정Ⅱ(장애인식 개선,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반부패청렴, 정보공개) 원격직무연수 -(상시)(장애인식,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통합 교육 원격직무연수 -(상시)(장애인식개선)다름과 닳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원격직무연수 -(상시)(장애인식개선)인식의 길라잡이 원격 직무연수 -(상시)(장애인식개선)인식의 새로운 출발 원격 직무연수	1. 경기도교육연수원 법정의무연수 -(상시)(공통)의무교육통합과정Ⅱ(장애인식 개선,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반부패청렴, 정보공개) 원격직무연수 -(상시)(장애인식,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통합교육 원격직무연수	1.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 (www.gseek.kr)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3. 유튜브_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 (1~4차시)
결과보고	교육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 (2022.12월 공문 알림 예정)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교육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2022.12월 공문 알림 예정)
문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보건복지개발원 ☎1600-8810)